

제39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 2차 산업건설 위원회
'99. 10. 15 (금) 10:00

의 안

○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영주시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9
------------	----

제출년월일 1999. 10.
제출자 영주시장

1. 개정이유

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편의을 증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 조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규정을 폐지함(안 제3조)
- 나. 건축현장의 현장관리인 자격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3조의2)
- 다. 기준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 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규정 폐지함(안 제14조)
- 마.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15조)
- 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완화함(안 제16조 내지 제28조)
- 사. 풍치지구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완화·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 폐지(안 제29조, 제33조, 제34조)

- 아.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대지면적의 최소한도·대지안의 공지·건축물 높이·건축면적·건축물 모양등 건축기준을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함(안 제35조 내지 제42조)
- 자. 학교시설 및 공용시설 보호구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규제를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함(안 제43조, 제44조)
- 차. 재해위험구역의 세분 규정을 폐지함(안 제47조)
- 카.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변경함(안 제53조)
- 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규정을 폐지함(안 제54조, 제55조)
- 파.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절차 및 기준을 폐지함(안 제57조)
- 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시공기준 및 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61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제9호 중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영 제5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9호”를 “영 제5조 제4항 제4호·제6호 및
제8호”로 한다.

①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영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하
고 구조 및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 1.5미터 이상
2. 용도변경 :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안에서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

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

2.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

3.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③ 영 제6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2 중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5조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8조 내지 제10조”를 “법 제8조 및 제10조”로, “신청 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는“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중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 제3항”을 “법 제14조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시장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제1항 중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을 “법 제3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

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17조 중 제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대지들레 길이의 5분지 1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천5백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승마장, 골프장, 궁도장, 사격장은 제외한다)
7.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면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에 한한다)
 12.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13.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단, 가목 내지 라목은 제외한다)

제18조 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0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4.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영 【별표3】 제2호 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5.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6.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단, 가목 내지 라목은 제외한다)

제19조 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0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영 【별표3】 제2호 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 한다)
9.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0조 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영 【별표6】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영 【별표3】 제2호 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 한다.)
7.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21조 중 제1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1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4.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5.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6.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 도계장은 제외)은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10. 영 【별표4】 제2호 마목의 공장

제22조 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0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6.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23조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5호 마목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은 제외한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 라목의 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동호 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5.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24조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 하는 것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6.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25조 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0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영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7.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26조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2.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5.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나목 내지 라목은 제외한다)
6.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7조 중 제1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1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6.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 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것
9.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0.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4.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5.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6.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9조 중 제1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9호를 삭제 한다.

1. 영 【별표1】 제2호 중 가목의 아파트
2. 영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 내지 아목 및 타목의 안마시술소.
3. 영 【별표1】 제5호 문화 및 접희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영 【별표1】 제7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영 【별표1】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직업훈련소
7.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8.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9. 영 【별표1】 제11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1.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12.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3.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4.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 포함)
15. 영 【별표1】 제17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6.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7. 영 【별표1】 제19호 공공용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8.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 제34조, 제2절(제35조 내지 제42조) 및 제3절(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제련소, 요업 및 화학공장에 한한다.)

2.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중 라목의 발전소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 중 “법 제54조 제3항”을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1호”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54조 제3항”을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2호”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법 제54조 제3항”을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법 제54조 제3항”을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1호”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54조 제3항”을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2호”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법 제54조 제3항”을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52조 제2항 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제1항 중 “법 제51조 제2항 및 영 제 82조 제1항”을 “법 제51조 제3항 단서“로, ”법 제51조 제1항“을 ”법 제51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을 “16층이상인”으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하고,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② 영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한다.
 - ③ 영 제8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

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정남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 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제59조 제1항 중 “영 제5조 제3항 제6호”를 “영 제5조 제4항 제6호”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타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문화 및 접회시설 : 대지면적의 6퍼센트 이상.
2. 판매 및 영업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6퍼센트 이상.
4.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5.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③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④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고 높이 기준의 1.2배이하.

제9장(제61조)을 삭제한다.

제10장의 장명 “보좌”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62조 내지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는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임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등 조정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 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 ④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 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6조(비용부담) 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감정, 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 입증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제67조(수당)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제6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척

제6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박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영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영 제1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8세제곱미터 이상의 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영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별표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1】 제18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5조
내지 제44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증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
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
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
한다.
-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호
의 1에 정하는 면적이상“을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의 각호를
삭제한다.

<별지>

【별표1】

건축허가등 수수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연면적 합계	건축허가	
	용도별	금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
	기 타	6,000
20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4,000
	기 타	13,000
1천제곱미터 미만		35,000
1천제곱미터 이상		60,000
5천제곱미터 미만		130,000
5천제곱미터 이상		250,000
10,000제곱미터 미만		500,000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0

단, 설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증가부분 면적에 따라 위 기준을 적용 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장.....
<p>제3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건축위원회(이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p> <p>2. <삭제 '96. 11. 16></p> <p>3. 불법·위법건축물 처리대책</p> <p>4. 기타 법·영·시 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p> <p>②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10 ~ 19 <생략></p> <p>③영 제5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 심의기준이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3조의2(현장관리인) 법 제2조 제17호 및 영 제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영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8<현행과 같음></p> <p>9..... 의결한다.</p> <p>10 ~ 19<현행과 같음></p> <p>③영 제5조 제4항 제4호·제6호 및 제8호.....</p> <p>제3조의2 <삭제></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건축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2.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건축관련 업무에 2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제4조(기준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p> <p>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 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준의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중축 또는 개축은 그 건 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 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종전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위 원희의 심의을 거쳐 건축할 수 있 다.</p> <p>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각목에 해당 하는 범위.</p> <p>가.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에서 는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 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p> <p>나.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 되는 용적률의 1.5배 이하.</p>	<p>제4조(기준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①</p> <p>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하 고 구조 및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 다.</p> <p>1.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 이 : 1.5미터 이상</p> <p>2. 용도변경 :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 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안에서 위원 희의 심의를 거친 경우</p>

다. 대지면적 기준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단,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② 영 제6조의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

2.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

3.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③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법·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하고 구조 및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의 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p>1. 대지의 최소한도 : 대지면적 최소 한도의 10분의 7이상</p> <p>2.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 이 : 1.5미터 이상</p> <p>3. 용도변경 :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 합한 정도 이하인 법위안에서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p>	<p>④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받은 건축물과 공유토지분할에 관 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조의2(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 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위는 법 제32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34조(도 로안의 건축제한), 법 제45조(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법 제 49조(대지면적 최소한도), 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일조등의 확보 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 56조(온돌의 구조등), 법 제67조(공 개공지등의 확보)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 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 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③ <생 략></p>	<p>제4조의2(적용의 완화) ①<삭 제></p> <p>②법 제5조 제3항..... 1 ~ 5<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8조(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 ①<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가 ~ 다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 ~ 라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p>1.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5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3호의 6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시장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징수한다.</p> <p>2. <생략></p> <p>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관계 등</p> <p>제1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생략></p>	<p>제6조(건축허가 수수료).....법 제8조 및 제10조.....소 신청하는.....</p> <p>제8조(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 ①<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4조 제6항..... 다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p>1.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시장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징수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3장.....</p> <p>제1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1항..... </p> <p>② ~④<현행과 같음></p>
--	--

제1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탁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삭 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미터이상 8미터미만인 때 8미터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5분의 1이상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미터이상 10미터미만인 때 10미터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5분의 1이상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

제15조(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 제3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밤법초소 및 불법행위 단속초소
2. 소규모 매점(신문판매대, 버스승차권 판매소등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축물)

제15조<삭 제>

- | | |
|--|--|
| <p>3. 육교위의 건축물.
4. 구두수선소.
5. 공공화장실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p> | |
|--|--|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노유자 시설.

2. 초등학교.

3.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4.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제4장.....

제1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
.....
.....
.....

1. 영【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2. 영【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희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영【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영【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p><u>5.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u></p>	<p>5. < 삭제 ></p> <p>제1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마시술소 및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단란주점을 제외한다)</p> <p>2.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를 제외한다)</p> <p>3.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p>	<p>제1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4.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플프장을 제외한다)</p>	<p>1. 영【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p>
<p>5.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p>	<p>2. 영【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저희시설</p>
<p>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p>	<p>3. 영【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의 5분지 1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p> <p>4. 영【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p> <p>5. 영【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6. 영【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승마장, 플프장, 궁도장, 사격장은 제외한다)</p>

7. 관람점 회시설(건축물 연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8미터이상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의 5분지 1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전시장에 한한다)

8. 전시시설

7.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통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관련 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공장(인쇄·봉제·필름현상·자동
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
련장치 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
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0. 참고시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와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
에 한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너비 20미터이상
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주차장, 자동차매
매장에 한한다)

13. 방송·통신시설

14.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
외한다)

15. 식물관련시설

제1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영 【별표1】 제14호의 참고시설

10.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
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액화가
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
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에
한한다)

12.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
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13.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
설(단, 가목 내지 라목은 제외한다)

14. < 삭제 >

15. < >

제1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p>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p> <p>2. 교육연구시설</p> <p>3. 운동시설(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p> <p>4. 업무시설(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p> <p>5.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p> <p>6. 관람전시시설(관람장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p> <p>7. 전시시설</p> <p>8.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름현상소(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로</p>	<p>..... <p>1. 영【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저희 시설</p><p>2. 영【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p><p>3. 영【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p><p>4. 영【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영【별표3】 제2호 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p><p>5. 영【별표1】 제14호의 참고시설</p><p>6. 영【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p>7. 영【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p><p>8. 영【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을 제외한다)</p></p>
---	---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9. 참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위험물취급소, 액화
가스취급소에 한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운전학원은 제외한다)

12. 식물관련시설

13. 방송·통신시설

14. 청소년수련시설

제19조(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
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층
으로서 5층 이하에 한한다)

3. 기숙사

4. 노유자시설

9. 영【별표1】제19호의 공공용 시설
(단, 가목 내지 라목은 제외한다)

10. < 삭제 >

11. < " >

12. < " >

13. < " >

14. < " >

제19조(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영【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3. 영【별표1】제7호의 의료시설(격리
병원은 제외한다)

4. 영【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p>5. 의료시설(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 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 며 격리병원은 제외한다)</p> <p>6. 교육연구시설</p> <p>7. 운동시설</p> <p>8. 참고시설</p> <p>9.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 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p> <p>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충전소에 한한다)</p> <p>11. 운수시설</p> <p>12.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 다)</p> <p>13. 청소년수련시설</p> <p>14. 장례식장</p>	<p>5.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p> <p>6. 영 【별표1】 제14호의 참고시설</p> <p>7.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영 【별표3】 제2호 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p> <p>8.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 외한다)</p> <p>9.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p> <p>10. < ></p> <p>11. < ></p> <p>12. < ></p> <p>13. < ></p> <p>14. < ></p>
--	---

제2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
.....
.....
.....

<p>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 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p> <p>2. 공동주택(당해용도에 해당하는 층으로서 5층 이하에 한한다)</p> <p>3. 노유자시설</p> <p>4. 교육연구시설</p> <p>5. 운동시설</p> <p>6.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p> <p>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저장소는 제외한다)</p> <p>8. 운수시설</p> <p>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p> <p>10. 관광휴게시설</p> <p>11. 청소년수련시설</p> <p>12. 장례식장</p>	<p>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p> <p>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영 【별표6】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p> <p>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p> <p>4.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p> <p>5.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영 【별표3】 제2호 아목 (1) 내지 (6) 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p> <p>6.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7.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p> <p>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p> <p>9.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 시설</p> <p>10. < 삭제 ></p> <p>11. < " ></p> <p>12. < " ></p>
제2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층
으로서 5층이하에 한한다)

2. 노유자시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
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
는 경우에 한한다)

7.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에 한한다)

8. 위탁시설

9. 관람집회시설

10. 전시시설

.....
.....
.....
.....

1. 영【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
시설

2. 영【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영【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4. 영【별표1】 제12호의 위탁시설

5. 영【별표1】 제14호의 참고시설

6. 영【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
외한다)

7. 영【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8. 영【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
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
장,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
한 1급 도계장은 제외)은 제외한
다】

9. 영【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10. 영【별표4】 제2호 마목의 공장

11.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1. < 삭 제 >
12. 참고시설	12. < " >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	13. < " >
14. 운수시설	14. < " >
1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 다)	15. < " >
16. 동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 도계장에 한한다)	16. < " >
17. 발전소	17. < " >
18. 방송·통신시설	18. < " >
19. 교정시설	19. < " >
20. 군사시설	20. < " >
21. 청소년수련시설	21. < " >
22. 장례식장	22. < " >
제2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 한다.	제2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균린생활시설	1. 영【별표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 활시설
2. 종교시설	2. 영【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저희 시설
3. 노유자시설	3. 영【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4. 위탁시설	4. 영【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p>5. 업무시설</p> <p>6. 전시시설</p> <p>7. 관람집회시설</p> <p>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저장소는 제외한다)</p> <p>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p> <p>10. 발전소</p> <p>11. 군사시설</p> <p>12. 첨소년수련시설</p> <p>13. 방송·통신시설</p> <p>14. 장례식장</p>	<p>5.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p> <p>6.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p> <p>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p> <p>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p> <p>10. < 삭제 ></p> <p>11. < " ></p> <p>12. < " ></p> <p>13. < " ></p> <p>14. < " ></p>
<p>제23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운수시설</p> <p>2. 노유자시설</p>	<p>제23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p> <p>.....</p> <p>.....</p> <p>.....</p> <p>.....</p> <p>.....</p> <p>1. 영 【별표1】 제5호 마목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p> <p>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p>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4. 군사시설

5. 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6. 의료시설

7. 전시시설(산업전시장·박람회장에 한한다)

8. 방송·통신시설

9.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공장의 부대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

3. 영【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은 제외한다)

4. 영【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하다), 동호 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5. 영【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6. < 삭제 >

7. < " >

8. < " >

9. < " >

제2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

.....

.....

.....

1. 영【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p><u>이 것에 한한다)</u></p> <p>2. 기숙사(공장 종업원용에 한한다)</p> <p>3. 종교시설</p> <p>4.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p> <p>5. 전시시설</p> <p>6. 운수시설</p> <p>7. 노유자시설</p> <p>8. 방송·통신시설</p> <p>9. 군사시설</p> <p>10. 교정시설</p> <p>11. 청소년수련시설</p> <p>12. 의료시설</p> <p>13.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p>	<p>2. 영【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접회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 하는 것</p> <p>3. 영【별표1】제7호의 의료시설</p> <p>4. 영【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p> <p>5. 영【별표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p> <p>6. 영【별표1】제19호의 공공용 시설</p> <p>7. < 삭 제 ></p> <p>8. < " ></p> <p>9. < " ></p> <p>10. < " ></p> <p>11. < " ></p> <p>12. < " ></p> <p>13. < " ></p>
<p>제2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단독주택</p> <p>2. 공동주택(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p>	<p>제2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p> <p>.....</p> <p>.....</p> <p>.....</p> <p>.....</p> <p>1. 영【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p> <p>2. 영【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p>

3. 종교시설	3. 영【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저희 시설
4. 노유자시설	4. 영【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영【별표11】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직업훈련소·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5. 영【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운동시설	6. 영【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7. 업무시설	7. 영【별표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관람전시시설	8. 영【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9. 판매시설	9. 영【별표1】 제9호의 공공용 시설
10. 전시시설	10. < 삭 제 >
11.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11. < " >
12. 운수시설	12. < " >
13. 방송·통신시설	13. < " >
14. 청소년수련시설	14. < " >
15. 의료시설	15. < " >
16. 군사시설	16. < " >
17. 교정시설	17. < " >
18. 장례식장	18. < " >
제2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	제2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p>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단독주택</u> <u>2.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u> <u>3. 노유자시설</u> <u>4.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u> <u>5. 종교시설</u> <u>6. 전시시설</u> <u>7. 참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u> <u>8.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u> <u>9. 묘지관련시설</u> <u>10. 장례식장</u> <u>11. 청소년수련시설</u> <u>12. 의료시설</u> <u>13. 동물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u>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영【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희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u> <u>2. 영【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u> <u>3. 영【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u> <u>4. 영【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u> <u>5. 영【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나목 내지 라목은 제외한다)</u> <u>6. 영【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u> <u>7. < 삭 제 ></u> <u>8. < " ></u> <u>9. < " ></u> <u>10. < " ></u> <u>11. < " ></u> <u>12. < " ></u> <u>13. < " ></u>
--	---

제2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균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종교시설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의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6.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7.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음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

제2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
.....
.....
.....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저희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6.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음·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

<p><u>한다.)</u></p> <p><u>8. 참고시설(농·축·수산업에 한한다)</u></p> <p><u>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u></p> <p><u>10. 분뇨·쓰레기처리시설</u></p> <p><u>11. 묘지관련시설</u></p> <p><u>12. 장례식장</u></p> <p><u>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u></p> <p><u>14.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u></p>	<p><u>한다.)</u></p> <p><u>8. 영【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등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것</u></p> <p><u>9. 영【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u></p> <p><u>10. 영【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u></p> <p><u>11. <삭제></u></p> <p><u>12. < " ></u></p> <p><u>13. < " ></u></p> <p><u>14. < " ></u></p>
<p>제2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u>1. 단독주택</u></p> <p><u>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u></p>	<p>제2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p> <p>.....</p> <p>.....</p> <p>.....</p> <p>.....</p> <p>.....</p> <p><u>1. 영【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저희 시설</u></p> <p><u>2. 영【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u></p>

	<p><u>설치 ·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u></p> <p>3. 기숙사</p> <p>4.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p> <p>5. 종교시설</p> <p>6. 숙박시설</p> <p>7. 관립집회시설</p> <p>8. 전시시설</p> <p>9. 공장(도점공장,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p> <p>10. <식제 96. 11. 16></p> <p>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12.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폐차장은 제외한다)</p> <p>1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p>
	<p>3. 영【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p> <p>4. 영【별표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점공장,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p> <p>5. 영【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p> <p>6. 영【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p> <p>7. < 삭, 제 ></p> <p>8. < " ></p> <p>9. < " ></p> <p>11. < " ></p> <p>12. < " ></p> <p>13. < " ></p>

<p><u>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임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u></p>	
제5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5장.....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제29조(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 치지구안에서는 제16조 내지 제2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29조(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 <u>나목 중 (3) 내지 (8)에 해당하는 건축물</u> 2. 운동시설 3. 격리병원 4. 직업훈련소, 사설강습소 5. 일반업무시설 6. 일반숙박시설 7. 판매시설 8. 위락시설	1. 영 【별표1】 제2호 중 가목의 아파 트 2. 영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나목 내지 아목 및 타목의 <u>안마시술소</u> . 3. 영 【별표1】 제5호 문화 및 침희시 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 5. 영 【별표1】 제7호 의료시설 중 격 리병원 6. 영 【별표1】 제8호 교육연구 및 복 지시설 중 직업훈련소 7.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8.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p>9. 공장</p> <p>10. 참고시설</p> <p>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p> <p>12. 운수시설</p> <p>13. 자동차관련시설</p> <p>14. 동물관련시설</p> <p>15. 분뇨·쓰레기 처리시설</p> <p>16. 교정시설</p> <p>17. 묘지관련시설</p> <p>18. 아파트</p> <p>19. 관립집회시설</p>	<p>9. 영 【별표1】 제11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p> <p>10.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p> <p>11.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p> <p>12. 영 【별표1】 제14호의 참고시설</p> <p>13.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p> <p>14.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 포함)</p> <p>15. 영 【별표1】 제17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16.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p> <p>17. 영 【별표1】 제19호 공공용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p> <p>18.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p>19. < 삭제 ></p>
<p>제33조(풍치지구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제곱미터로 한다.</p>	<p>제33조 < 삭제 ></p>

<p>제34조(풍치지구내 대지안의 공지)별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 지구안의 건축물은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1 미터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 < 삭제 ></p>
<p>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p> <p>제35조(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①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 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 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 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2. 공장3. 창고시설4. 교정시설	<p>제2절 < 삭제 ></p> <p>제35조 < 삭제 ></p>

5. 묘지관련시설

6. 저탄장, 야적장

7. 격리병원

8.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건축물을
제외한다)

9. 동물관련시설

10.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③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
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및 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
1호 내지 제7호의 건축물 및 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
1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7호
의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

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 및 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⑦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
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
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
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미관지구내 대지면적의 최소한
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
도는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
다.

1. 제1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150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
정된 미관지구안 : 150제곱미터

제37조(미관지구내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
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
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제36조 < 삭제 >

제37조 < 삭제 >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중축 및 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너비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미관지구 : 3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2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조형물·파고
라·배치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8조(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
한 층수 이외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38조 < 삭제 >

제39조(미관지구안의 건축면적)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 축 면 적
3층이하	50제곱미터
4층 - 10층	100제곱미터
11층 - 15층	200제곱미터
16층이상	300제곱미터

제39조 < 삭제 >

제40조(미관지구내 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0조 < 삭제 >

제41조(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
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에 대한 구조·형
태·색채 및 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
다.

제41조 < 삭제 >

제42조(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부수시설

제42조 < 삭제 >

<p>등)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p>	
<p>제3절 <u>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u></p>	<p>제3절 < 삭제 ></p>
<p>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균린생활시설 영【별표1】 제4호 나무중 (3), (7), (8)에 해당하는 건축물2. 격리병원3. 숙박시설4. 판매시설5. 위락시설6. 공장7. 참고시설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 운수시설10. 자동차관련시설11. 동물관련시설12. 분뇨·쓰레기처리시설13. 교정시설14. 묘지관련시설	<p>제43조 < 삭제 ></p>

- 15. 장례식장
- 16. 관광휴게시설
- 17. 종교시설
- 18. 발전소

제44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2. 근린생활시설
- 3. 종교시설
- 4. 노유자시설
- 5. 의료시설
- 6.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 7. 운동시설
- 8. 숙박시설
- 9. 판매시설
- 10. 위락시설
- 11. 관람집회시설
- 12. 동·식물관
- 13. 공장
- 14. 참고시설
-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4조 < 삭제 >

- | | |
|---|--|
| <p><u>16. 운수시설</u></p> <p><u>17. 자동차관련시설</u></p> <p><u>18. 동물관련시설</u></p> <p><u>19. 분뇨·쓰레기처리시설</u></p> <p><u>20. 식물관련시설</u></p> <p><u>21. 발전소</u></p> <p><u>22. 교정시설</u></p> <p><u>23. 묘지관련시설</u></p> <p><u>24. 장례식장</u></p> <p><u>25. 관광휴게시설</u></p> <p><u>26.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u></p> | |
|---|--|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4절

제45조(공항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1.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제련소, 요업 및 화학공장에 한한다.)

2. 제련소

2.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중 라목의 발전소

3. 요업공장

3. < 삭 제 >

4. 화학공장

4. < " >

제5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5절
<p>제47조(재해위험구역의 세분)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p> <p>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 홍수 · 산사태 ·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p> <p>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 홍수 · 산사태 ·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p> <p>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삼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최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p>	<p>제47조 <삭 제></p>
<p>제48조(재해위험구역내 건축물의 용도)</p> <p>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p> <p>1 ~ 7 <생 략></p>	<p>제48조(재해위험구역내 건축물의 용도)</p> <p>①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1호</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p>	<p>②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2호</p> <p>.....</p>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5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54조 제3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u>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3호</u>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9조(재해위험구역내 건축물의 구조 안전) ① <u>법 제54조 제3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9조(재해위험구역내 건축물의 구조 안전) ① <u>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1호</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p>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③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u>제6장 건폐율·용적율</u></p> <p>제52조(용적율의 완화) ① <생략></p> <p>② <생략></p> <p>1. 특정가구점비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율</p> <p>2 ~ 4 <생략></p> <p>제5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p> <p>1. 전용주거지역 : 150제곱미터</p> <p>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다만, '90. 1. 18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대지는 130제곱미터)</p> <p>3. 준주거지역 : 70제곱미터(다만, '90. 1. 18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p>	<p>②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2호..... 1 ~ 2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 제1항 제3호..... 1 ~ 2 <현행과 같음></p> <p>제6장.....</p> <p>제52조(용적율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삭제></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5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p> <p>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p> <p>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p> <p>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p>
--	---

<p>시행된 대지는 130제곱미터)</p> <p>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p> <p>5. 일반상업지역 : 150제곱미터(다만,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300제곱미터)</p> <p>6. 근린상업지역 : 150제곱미터(다만,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250제곱미터)</p> <p>7. 유통상업지역 : 200제곱미터</p> <p>8. 전용공업지역 : 200제곱미터</p> <p>9. 일반공업지역 : 200제곱미터</p> <p>10. 준공업지역 : 150제곱미터</p> <p>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p> <p>12. 생산녹지지역 : 150제곱미터</p> <p>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p> <p>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60제곱미터</p>	<p>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p> <p>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p>
<p>제54조(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p> <p>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p>	<p>제54조 < 삭제 ></p>

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농어촌산업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용도	지역구분	띄워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 미터미만	1천제곱 미터이상	
공해공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준공업지역	1.5	2	모든건축선
	기타지역	3	4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농어촌산업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띄워야 할 거리			(단위 : 미터)	
용도	지역구분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 미터미만	1천제곱 미터이상	
차고시설, 운수시설, 자동 차관련시설(운 전점비화원제 의)	준공업지역	1.5	2	2면이상이 도로에 접한 경우 주출입구 가 있는 도로
	기타지역	3	4	

3. 담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대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띄워야 할 거리			(단위 : 미터)	
용도	지역구분			적용대상 건축선
		2천제곱 미터미만	2천제곱 미터이상	
판매시설,숙박 시설, 관람집회 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운동 시설, 관광휴게 시설, 의료시설	모든지역	2	3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

4. 공동주택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지역구분	띄워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공동주택(아파트 에 한한다)	해당전지역	3	모든 건축선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 기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1미터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
다.

제55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
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는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건축물의
의 외벽으로서 계단 및 노대를 포함
한다)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
는 거리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
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사는 제외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공
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
축물의 경우는 다음에서 정하는 거
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
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
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농어촌산업지구에 한한
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5조 < 삭제 >

의워야 할 거리			(단위 : 미터)
용도	지역구분	1천제곱 미터미만	1천제곱 미터이상
		1	2
공해공장, 위험 물제조소, 위험 물저장소	준공업지역	1	2
	기타지역	2	3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워야 할 거리			(단위 : 미터)
용도	지역구분	2천제곱 미터미만	2천제곱 미터이상
관공시설, 수박 시설, 관립진회 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모든지역	1	2

3.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의워야 할 거리			(단위 : 미터)
용도	지역구분	의워야 할 거리	적용대상 인접대지 경계선
공동주택	모든지역	3(아파트를 제외 한 공동주택 : 1)	모든 인접 대지 경계선

4. 기타건축물 : 0.5미터이상.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읍·
면지역은 10미터)이상 도로에 삼호
접한 대지로서 인접대지소유자의
접벽동의를 받은 경우와 단독주택
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협의한 경
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56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
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
제2항 및 영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
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
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 3 <생략>

② 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
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
는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 까지의
1.5배이하로 한다.

제7장

제56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
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
제3항 단서.....

.....법 제51조 제3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16층이상인

제57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 범 제52조 및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② 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5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초과 8미터 미만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의 4분의 1이상.

제57조 < 삭제 >

제5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범 제53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4. 3층이상인 건축물과 높이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초과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산업지역, 일반산업지역, 근린 산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이하.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4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한다.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

③ 영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정남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제8장 도시설계

제59조(도시설계 작성방법) ① 영 제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3조의 규정에 의

제8장.....

제59조(도시설계 작성방법) ① 영 제5조 제4항 제6호.....
.....

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 생 략 >

제6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6퍼센트 이상.
3. 관광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4.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6퍼센트 이상.
5. 관립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타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6퍼센트 이상.

<p><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2. 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p> <p>3. 벤치.</p> <p>4. 식수대.</p> <p>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p> <p>③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p> <p>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율의 1.2배 이하.</p> <p>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공지기준의 5분의 1이하.</p> <p>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고 높이기준의 1.2배이하.</p>	<p>2. 판매 및 영업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p> <p>3.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6퍼센트 이상.</p> <p>4.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p> <p>5.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p> <p>③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p> <p>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p> <p>3. 벤치.</p> <p>4. 식수대.</p> <p>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p> <p>④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p>
---	--

	<p>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p> <p>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고 높이 기준의 1.2배이하.</p>
제9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9장 < 삭제 >
제61조(온돌의 시공)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려하지 아니하다. 1. 구들은 온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들은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온수온돌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61조 < 삭제 >

③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건축감리자에게 구들
온돌 시공자는 성명, 시공내용, 하자
보증기간이 명시된 구들온돌시공확인
서를, 우수온돌 시공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성명
상호, 시공업지정번호, 시공내용, 하
자보증기간을 명시한 설치·시공확인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초

제62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 유희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쇠
 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
 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
 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제10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62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② 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는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임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등 조정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3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의조정(건설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건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내에 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관계자와 담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2. 관계전문 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 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시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차정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7인이내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참석위원중에서 선출하여 임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 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 | | |
|---|--|
| <p>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
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p> <p>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 할 수 있다.</p> <p>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록등 조정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⑥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
다.</p> | |
|---|--|

⑦ 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 활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66조(조정소위원회) 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소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의 건축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선임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소위원회의 의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③ 조정소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받은 것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간음하며, 조정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6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분쟁의 조정 사항중 당사자가 10인이내인 분쟁조정 및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분쟁
2. 이해 당사자의 긴급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3. 진정·탄원등 건축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66조(비용부담) 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정, 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제67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조

제67조(수당) 조정위원회에 참석 한 위

<p><u>정신적 안전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및 진단, 시험등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u></p>	<p><u>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1. 감정, 진단 및 시험등 심의·조정에 소요되는 비용</u></p> <p><u>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u></p> <p><u>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을 입증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u></p>	
<p><u><신설></u></p>	<p><u>제11장 보칙</u></p>
<p><u><신설></u></p>	<p><u>제6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u></p> <p><u>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쇠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u></p> <p><u>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u></p>

	<p><u>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u></p> <p>2. 저감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감시설, 석탄저감시설, 시멘트 저장용 쌔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3. 유회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p> <p>4. 소각시설</p> <p>②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p> <p>1. 영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2. 영 제1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8세 계곱미터 이상의 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③ 영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8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p>
--	---

(제39회 - 산업건설 제2차 부록)

【별표1】 건축허가수수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별표2】 건축허가등 수수료(제6조 관련) (단위 원)			
건축(용도변경)하고 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연면적 합계	건축허가	
	용도별	금액	용도별	금액		용도별	금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	단독주택	1,000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
	기 타	6,000	기 타	3,000		기 타	6,000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	단독주택	2,000	2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
	기 타	13,000	기 타	7,000		기 타	13,000
1천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35,000		13,000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35,000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60,000		30,000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60,000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130,000		65,000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130,000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250,000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250,000
1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미만		500,000			1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미만		500,000
30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0			30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0
단. 설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증가부분 면적에 따라 위 기준을 적용한다				단. 설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증가부분 면적에 따라 위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법령(발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第2條(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川路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建设用地”라 함은 地籍法에 의하여 각 地地로 区割된 土地를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2이상의 建地를 하나의 建地로 하거나 1이상의 建地의 일부를 하나의 建地로 할 수 있다. “建築物”라 함은 土地에 定着하는 工作物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附着되는 施設物, 地下 또는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公演場·店舖·車庫·倉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建築物의 用途”라 함은 建築物의 종류를 유사한 建造·利用目的 및 形態別로 둘어 分類한 것을 말한다. 3. “建設施設”라 함은 建築物에 설치하는 電氣·電話·기스·給水·配水·排水·熱氣·暖房·消火·排煙 및 物物處理의 設備와 運輸·升降機·電梯·腳踏車·搬運機械·車輛·搬運員·有線放送受信施設·郵便物受取面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備을 말한다. 4. “地下層”이라 함은 建築物의 바닥이 地表而 아래에 있는 層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地表面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層높이의 2分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居室”이라 함은 建築物안에서 居住·執務·作業·集會·娛樂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房을 말한다. 6. “主要構造部”라 함은 耐力壁·기둥·바닥·보·지붕을 및 主筋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屋外階段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建築物의 建造上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削除 [99. 2. 8] 8. 削除 [99. 2. 8] 9. “[建築]”이라 함은 建築物을 新築·增築·改變·再製 또는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10. “[大修繕]”이라 함은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修繕 또는 변경 建築物의 외부 형태의 변경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11. “看路”라 함은 進行 및 自動車通行이 가능한 나비(峴谷)나 암장의 道路(地形)의 路面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암나온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나비의 道路)로서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道路 또는 그 延伸道路를 말한다. 가. 都市計劃法, 道路法, 私道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施設 또는 更改에 관한 告示기 된 道路 나. 建築許可 또는 中央省·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長·郡守·區縣長(自治區의 地點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位置을 지정·公告한 道路		
12. “建築主”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大修繕, 建築設備의 整修 또는 工作物의 旁造(이하 “建築物의 建築等”이라 한다)에 관한 工事를 施行하거나 現場管理人을 두어 스스로 그 工事を 행하는 者를 말한다.		
13. “設計者”라 함은 자기 責任 하에(補助者の 助力を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設計圖面를 작성하고 그 設計圖面에 의도한 바를 解釋하며 指導·諮詢하는 者를 말한다.		
14. “設計圖面”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等에 관한 工事用의 規範과 構造計算書 및 示方書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工事에 필요한 項目를 말한다.		
15. “工事監理者”라 함은 자기 責任 하에(補助者の 助力を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物·建築設備 또는 工作物이 設計圖面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하여 指導·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16. “工事施工者”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规定에 의한 建設工事を 행하는 者를 말한다.		
17. 消除 [99. 2. 8]		
18. “간접 專門技術者”라 함은 建築物의 講述·設論 등 建築物과 관련된 專門技術의 資格을 보유하고 있거나 및 工事監理에 참여하여 設計者 및 工事監理者와 협력하는 者를 말한다.		
②第1項第2號의2의 规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用途에 속하는 建築物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重篤住宅 2. 共同住宅 3. 第1種 近傍生活施設 4. 第2種 近傍生活施設		

(제39회 - 산업건설 제2차 부록)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5. 文化災害防護設 6. 販賣災害防護設 7. 醫療施設 8. 教育研究及福利施設 9. 運動施設 10. 藥物施設 11. 商泊施設 12. 娛樂施設 13. 工場 14. 倉庫施設 15. 危険物貯藏及處理施設 16. 自動車駕駛施設 17. 動物及植物關聯施設 18. 賽馬·賽狗場施設 19. 公公用施設 20. 草地關聯施設 21. 觀光休憩施設 22. 기타 大統領이 정하는 施設	<p>제3조(대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도로의 지표화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第4條(建築委員會) ①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법 및 該例의 施行에 관한 중요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각각 建築委員會를 두어야 한다.</p> <p>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委員會가 설치하는 建築委員會(이하 "中央建築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專門委員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會는 中央建築委員會가 정하는 사항을 審議한다.</p> <p>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사람은 中央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建築委員會의 職務·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建築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該例(自治區의 경우에는 郡·里市 또는 廉城市의 該例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p>	<p>로 합격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격대상이 되는 토지</p> <p>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성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빙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할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p>제3조 ③ 삭제 [99. 4. 30]</p> <p>제3조 ④ 삭제 [99. 4. 30]</p> <p>제3조 ⑤ 삭제 [99. 4. 30]</p>	
<p>第5條(적용의 説和) ①建築主·設計者·工事監理工 또는 工事監理者(이하 "建築關係者"라 한다)는 그 著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p>	<p>제5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p>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상습리하고 인정되는 货地 또는 建築物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法의 기준을 緩和하여 적용할 것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許可権者”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許可権者は 第4條의 欄定에 의한 建築委員會(이하 “建築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緩和與否 및 적용범위를決定하고 그 결과를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위한 요청 및決定의 順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例로 정한다</p>	<p>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포함한 50인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p> <p>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③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기타분야 <p>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 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삭제 [95. 12. 30] 삭제 [99. 4. 30]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장에 관한 사항 삭제 [97. 9. 9] 법 제62조·법 제62조의2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삭제 [99. 4. 3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종교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외료 시설 등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등 관광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6층이상인 건축물 삭제 [98. 5. 23] <p>⑤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p> <p>⑥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p>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第5條의2(既有의 建築物에 대한 特例) 許可權者は 法令의 制定·改正이나 기타 大政 領袖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境地 또는 建築物이 이 法의 規定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大政領袖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 自治團體의 該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을 许可할 수 있다.</p>	<p>지방기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한다.</p> <p>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의 길정·변경 또는 생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낙세 [99. 4. 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 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p>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을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 안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p>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p> <p>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p>	<p>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의 길정·변경 또는 생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낙세 [99. 4. 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 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p>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을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 안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p>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사와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사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를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제39회 - 산업건설 제2차 부록)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第23條(現場調査·検査 및 確認業務의 代行)</p> <p>①市長·都守·區縣長은 이 법의 規定에 의한 現場調查·検査 및 確認業務(申告對象建築物에 대한 現場調査·検査 및 確認業務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土政에 의한 建築土事務所를 指定한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務를 代行하는 者는 現場調査·検査 또는 確認結果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都守·區縣長에게 聲明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③市長·都守·區縣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에게 事務를 代行하게 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樣例로 정하는 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농업폐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열분이 활용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인 건축물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지급하여야 한다.</p>

(제39회 - 산업건설 제2차 부록)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 등의 조치에 관련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5 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항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p>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인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궁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p> <p>제29조 및 제30조 삭제[99.4.30]</p> <p>2032호(亞地안의 設置)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亞地에 建築을 하는 建築主는 用途地域 및 建築物의 규모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例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亞地안에 適合 기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p>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高さ이 필요하지 아니한 建築物로서 大統領 이 정하는 建築物에 대하여는 造景등의 措 置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屋上造景 등 大 統領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p> <p>②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基準, 造景施設物의 종류 및 設置方法, 屋上造景의 方法등 造景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p>		
<p>第33條(垈地와 道路의 관계) ①建築物의 垈地 는 2미터이상을 道路(自動車만의 通行에 사 용되는 道路를 제외한다)에 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증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建築物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建築物의 주변에 大統領이 정하는 空地 가 있는 경우 <p>②建築物의 垈地가 接하는 道路의 너비, 그 Neillie가 道路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垈地와 道路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第49條(垈地의 分割制限) ①建築物이 있는 垈 地는 大統領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 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만큼에 미달되 게 分割할 수 있다.</p> <p>②建築物이 있는 垈地는 第33條·第47條·第 48條·第51條 및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 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있다.</p>		
<p>第50條 前條 [99. 2. 8]</p> <p>第51條(建築物의 높이제한) ①許可権者は 街 路區域(道路로 둘러싸인一圈의 地域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大統領이 정하는 기준과 順次에 따라 建築物의 최고높 이를 지정·公告할 수 있다. 다만, 市長·郡 守·區廳長은 街路區域의 최고높이를 완화하 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垈地에 대하여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 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p> <p>②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도시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街路區域에 建築物의 최고높이를 特別市 또 는 廣域市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 지 아니한 街路區域의 경우에는 建築物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斜面道路의 반대쪽 境界線까지의 水平距離의 1.5倍를 초</p>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가짐 수 있다. 다만, 토地位가 2이상의 道路, 公園, 廣場, 河川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建築物의 높이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案例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第52條 [削除] [99. 2. 8]</p> <p>第53條(自然등의 特殊性을 위한 建築物의 높이 제한) ①専用住宅地盤 및 一般住居地盤안에서建築하는 建築物의 높이는 日照등의 확보를 위하여 正北方向의 隔障物地盤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抵準度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p> <p>②共同住宅(一般商業地盤과 中心商業地盤에建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과 大抵準度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建築物의 높이를 正南方向의 隔障物地盤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抵準度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宅地開發促進法 第3條의規定에 의한宅地開發促進地盤인 경우 2.住宅建設促進法 第30條의規定에 의한宅地造成事業地盤인 경우 3.都市計劃法 第2條第8款의規定에 의한一團의 住宅地造成事業施行地區인 경우 4.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法 第2條第5款·同法 第4條 및 同法 第9條의規定에 의한 融合團地·廣域開發團域·開發促進地區인 경우 5.產業立地契開發에 관한法 第6條 대지 第8條의規定에 의한 國家產業團地·地方產業團地 및 工業團地인 경우 6.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3條의规定에 의한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地인 경우 7.都市再開發法 第4條의规定에 의한 再開發團地인 경우 8.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應時措置法 第3條의规定에 의한 住居環境改善地區인 경우 9.正北方向으로 道路·公園·河川 등 建築이 금지된 주체에 접하는 土地位인 경우 10.正北方向으로 面하고 있는 土地位의 所有者와 合意한 경우 기타 大抵準度가 정하는 경우 <p>⑩2점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建築物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案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대지 第3項의規定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제39회 - 산업건설 제2차 부록)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第54條(災害危險區域) ①許可権者は 沖縄·高麗·水谷 기타 災害가 생길 우려가 있어 建築物의 建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地域을 灾害危險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灾害危險區域은 灾害危險의 정도에 따라 第1種 내지 第3種 灾害危險區域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②許可権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灾害危險區域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자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p> <p>③災害危險區域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例로 정한다.</p> <p>④災害危險區域안에서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第47條·第48條·第51條 및 第53條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第56條 附錄 [99. 2. 8]</p>	<p>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제한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주거지역 :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준주거지역 :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심상업지역 : 별표 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반상업지역 :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근린상업지역 : 별표 7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유통상업지역 :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용공업지역 : 별표 9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반공업지역 :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준공업지역 : 별표 1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전녹지지역 : 별표 1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12. 생산녹지지역 · 발표 1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3. 자연녹지지역 : 발표 1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p> <p>제68조(봉지지구안의 건축물) ①봉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자연봉지의 보전·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p> <p>②봉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와 대지면적 조건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봉지의 보전·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p> <p>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삭제 [99. 4. 30]</p> <p>제73조(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①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p> <p>제79조(용적률)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4. 중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300퍼센트이하 6. 근현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100퍼센트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11. 보건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14.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천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정한 비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p> <p>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간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간에 20미터이상 셀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p> <p>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p> <p>⑤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간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p> <p>1. 삭제 [99. 4. 30]</p> <p>2. 아파트지구</p> <p>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p> <p>4. 도시계획발법에 의한 체계발구역</p> <p>5. 상업지역</p> <p>⑥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률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제80조(건축물이 있는 내시의 분할 세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역 : 60세곱미터 상업지역 : 150세곱미터 공업지역 : 150세곱미터 녹지지역 : 200세곱미터 제1호 내시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세곱미터 <p>제81조(주택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0조의 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건축주는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일계단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 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너비가 2.5미터이상, 높이가 3미터이하일 것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서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용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p>제85조 삭제 [99. 4. 30]</p> <p>제86조(인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복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뛰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면적합성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p>	

(제39회 - 산업건설 제2차 부록)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p> <p>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p> <p>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건축하여야 한다.</p> <p>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세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p> <p>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뛰어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등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p> <p>나. 세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축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p> <p>다. 축벽과 축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p> <p>③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정찰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창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p>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액의 장부명으로서의 인감내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내지 강계선기의 중점선)을 인감내지경계선으로 한다.</p> <p>제86조의2(재해위험구역) ①법 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재해위험구역·제2종 재해위험구역·제3종 재해위험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재방봉과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재방봉과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p>②허가권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제2종 재해위험구역·제3종 재해위험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p> <p>③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113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접희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 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희과·파고각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디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p>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④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약제 [99. 4. 30]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체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p>⑤비단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8조(용역 및 공작물 등에 의한 충돌)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용벼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풀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근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세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썬이로를 포함한다)·유화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상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장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p>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을 축조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③(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속도에 대하여 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은 공작물의 형태 및 세대를 제한하는 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울의 정고을 등 관리법에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준용하며,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50조의 규정은 제1항제9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속도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부 칙<99. 4. 30></p> <p>(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5조·제27조·제81조·제90조·제111조·별표 3 제2호작목·별표 4 제2호사목·별표 5 제2호아목·별표 6 세도부목·별표 7 제2호사목·별표 8 제2호사목·별표 11 제1호아목·별표 12 제2호아목·별표 13 제1호사목·별표 14 제2호사목·제67조·제69조제3항·제91조·제91조제2항·제92조를 삭제한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종신의 제69조제1항·제2항·제70조·제72조·제73조·제7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p> <p>③(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신속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과 표의 민족면에 해당하는 용도는 표의 오른쪽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전의 용도</th> <th>개정된 용도</th> </tr> </thead> <tbody> <tr> <td>기숙사</td> <td>공동주택</td> </tr> <tr> <td>근린공공시설</td> <td>제1종 균관생활시설</td> </tr> <tr> <td>종교시설, 관습집회시설, 전시시설</td> <td>문화 및 청파시설</td> </tr> </tbody> </table>	종전의 용도	개정된 용도	기숙사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제1종 균관생활시설	종교시설, 관습집회시설, 전시시설	문화 및 청파시설	<p>부 칙<99. 5. 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조건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p> <p>제3조(건축허가대장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증을 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증으로 본다.</p> <p>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일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3호목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입지인에 대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등면도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이 등면도 및 호수 등이 변경되는 사실을 통지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이 등면도 및 호수 등이 변경되는 사실을 통지시켜야 한다.</p> <p>②모든 계도시동의 운영에 관한 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p>
종전의 용도	개정된 용도										
기숙사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제1종 균관생활시설										
종교시설, 관습집회시설, 전시시설	문화 및 청파시설										

(제39회 - 산업건설 제2차 부록)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제2회(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第18條第4項 의 개정 규정은 이 법施行후 최초로 사용승 인을申請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회(一般的 經過措置) 이 법施行 당시 建築 허가를 申請중인 경우와 建築허가를 받거나 建築申告를 하고 建築중인 경우의 建築基準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建築主·施工者 또는 工事監督者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p> <p>제4회(既存의 道路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는 第2회第1項第 11號나目的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公告 된 것으로 본다.</p> <p>제5회(特別市 또는 廣城市의 例例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규정은 第46條第5項, 第51條 第36항, 第55條의2, 第116條第2항, 第23條第3항, 第32條, 第45條第2항, 第46條第1항, 第47條第 1項, 第35항, 第48條第1項·第3항, 第49條, 第 51條, 第76條의23항 및 第76條의7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特別市 또는 廣城市的 例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例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6회(建築許可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施行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市長·都 守·道廳長에게 建築허가를 申請중인 것으로 서 第8條第1項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特別市長 또는 廣城市長의 許可事項으로 된 것은 同様同項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特別市 長 또는 廣城市長에게 許可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p> <p>②이 법施行 당시 종전의 第8條第3項의 규정 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城市長에게 建築 허가의 사전승인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8條第 1항 相當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城市長에게 建築허가를 申請한 것으로 본다.</p> <p>제7회(川途變更許可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施行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川途變更 허가를 申請중인 것은 第14條第2項 本文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川途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8회(設計圖面作成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施行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建築土協 會가 建設交通部民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 設 計圖面作成基準은 第19條第2項의 개정 규정 에 의하여 建設交通部民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으로 본다.</p> <p>제9회(共同部令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 措置) 第29條第2項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새 로이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의 共同部令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共同部令이 制定될 때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한예시설, 운수시설</td><td style="width: 50%;">환경 및 영업시설</td></tr> <tr> <td>장례식장</td><td>외로시설</td></tr> <tr> <td>노숙자시설, 청소년수련시설</td><td>교육연구 및 복지시설</td></tr> <tr> <td>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td><td>동물 및 식물관련시설</td></tr> <tr> <td>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td><td>공공용시설</td></tr> </table> <p>④(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0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 할 수 있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 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p> <p>⑤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 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 한다.</p>	한예시설, 운수시설	환경 및 영업시설	장례식장	외로시설	노숙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공공용시설	
한예시설, 운수시설	환경 및 영업시설											
장례식장	외로시설											
노숙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공공용시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p>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第10條(建設交通需處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計劃措置) 第30款, 第39條第2項, 第41條第2項, 第42條 및 第43條의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建設交通需處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建設交通需處이 制定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第11條(높이제한 級和區域에 관한 計劃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級和區域안에 建築하는 建築物의 높이제한에 관하여는 第51條第1項의改正規定에 의하여 第54條제1항後段의改正規定에 의한 第34호 水害危險區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第12條(기존의 市市設計地區중에 전한 計劃措置) ①市長·郡守·군현장은 第60條의2第1項第7호 및 第9호 내지 第15호의改正規定에 의한 地區등으로서 이 法 施行 당시 당해 地區 등에서 施行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地區 등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 후 1년이내에 이를 第60條의2第1項의改正規定에 의한 市市設計地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第60條의2第2항 원활의改正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이 法 施行 당시 기존의 市市設計地區는 第60條의2의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市市設計地區으로 보며,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市市設計은 第62條의改正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p> <p>第14條(剖則에 전한 計劃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規定에 의한다.</p>		

(제39회 - 산업건설 제2차 부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 4]

증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별표 3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나. 별표 1 제7호의 제2호 균형생활시설
 - 다. 별표 1 제7호의 퍼포먼스설계 및 정체식장을 제외한다
 - 라. 별표 1 제9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마.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별표 1 제9호의 문화 및 강좌시설
 - 나.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다. 별표 1 제7호의 퍼포먼스설계 및 정체식장
 - 라.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별표 1 제13호의 유통점 별표 3 제2호아목(3)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 퍼포먼스설계
 - 바.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사. 별표 1 제15호의 위생용具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역의 지역에 설치하는 배화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작성소를 제외한다)
 - 아.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판전시설
 - 자. 별표 1 제17호의 물품 및 식물판전시설
 - 자.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물을 이용 건축할 수 있다.

- 나. 별표 1 제3호의 제1호 균형생활시설
- 다. 별표 1 제4호의 제2호 균형생활시설
- 라.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강좌시설
- 마.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바. 별표 1 제7호의 퍼포먼스설계
- 사.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별표 1 제11호의 퍼포먼스설계
- 사. 별표 1 제12호의 퍼포먼스설계
- 자.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라.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별표 1 제9호의 공동주택(제1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다.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라.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마. 별표 1 제13호의 공동주택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 퍼포먼스설계
- 바. 별표 1 제15호의 위생용具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역의 지역에 설치하는 배화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작성소를 제외한다)
- 사.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판전시설
- 마. 별표 1 제17호의 물품 및 식물판전시설
- 자. 별표 1 제21호의 판매용具장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물을 이용 건축할 수 있다.

[별표 5]

증신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별표 1 제3호의 제1호 균형생활시설
 - 나. 별표 1 제9호의 제2호 균형생활시설
 - 다.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라. 별표 1 제9호의 업무시설
 - 마.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사. 별표 1 제12호의 퍼포먼스설계
 - 마.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별표 1 제9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로 복합된 것에 한한다)
 -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별표 1 제9호의 퍼포먼스설계
 - 라. 별표 1 제9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마.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라. 별표 1 제10호의 창고시설
 - 사. 별표 1 제13호의 공장용具장 · 인쇄 및 기획디자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마. 별표 1 제15호의 위생용具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역의 지역에 설치하는 배화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작성소를 제외한다)
 - 자.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판전시설
 - 자. 별표 1 제17호의 물품 및 식물판전시설
 - 자.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물을 이용 건축할 수 있다.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별표 4 제1호 자체에 해당하는 건축물
 - 나.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전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별표 1 제7호의 퍼포먼스설계 및 정체식장
 - 라. 별표 1 제11호의 퍼포먼스설계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별표 4 제2호이하의 공동
 - 나. 별표 1 제9호의 문화 및 강좌시설
 - 다.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전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라.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별표 1 제12호의 퍼포먼스설계
 - 마.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사. 별표 1 제15호의 위생용具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역의 지역에 설치하는 배화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작성소를 제외한다)
 - 마.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판전시설
 - 자. 별표 1 제17호의 물품 및 식물판전시설
 - 자.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물을 이용 건축할 수 있다.

[별표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다른 용도 외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한한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별표 1 제3호의 제1호 균형생활시설
 - 나.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다. 별표 1 제4호의 창고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별표 1 제4호의 제2호 균형생활시설
 - 나. 별표 1 제7호의 문화 및 강좌시설
 - 다. 별표 1 제9호의 퍼포먼스설계 및 정체식장
 - 마.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법지행령

이.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미. 별표 1 제12호의 터미널시설
사. 별표 1 제15호의 휴게실시설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장과 지역에 설치하는 역사(여객기증승선소 및 고粱기증승선·여객터미널을 제외한다))
이.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판란시설
자. 별표 1 제19호의 공용용수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 9)

건축조성의원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제1항제9호판란)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제1종 균형생활시설
나.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형생활시설(단면주장을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13호의 문화
라. 별표 1 제14호의 청소년시설
미. 별표 1 제15호의 휴게실 및 처리시설
비.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판란시설
사. 별표 1 제18호의 문화 및 청소년시설
이. 별표 1 제19호의 공용용수시설을 받친다.
2. 건축할 수 있는 바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9호의 문화 및 청소년시설 및 박물관
나. 별표 1 제6호의 편의 및 영업시설(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경상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9호의 휴게시설(경상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별표 1 제9호의 교육연구 및 청소년시설을 동호사업과의 사업체(여객기증승선·여객터미널을 제외한다)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호사업과의 연구(사업과)에 관계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경상대에서 신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업에 해당하는 것
비. 별표 1 제19호의 공용용수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 10)

일반공장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제1항제9호판란)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9 제9호 자체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별표 1 제9호의 편의 및 영업시설(경우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경상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조리가 정하는 바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9호의 문화
나. 별표 1 제9호의 문화 및 청소년시설
다. 별표 1 제4호의 교육연구 및 청소년시설
라. 별표 1 제17호의 풍물 및 각종전시시설
미. 별표 1 제19호의 공용용수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 11)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제1항제10호판란)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0 제9호 자체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3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드이는 바이번역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별표 1 제2호의 온수주 네로 기숙사
미. 별표 1 제7호의 터미널시설
라. 별표 1 제9호의 교육연구 및 청소년시설
2. 건축조리가 정하는 바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9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2호의 풍물용수시설
다. 별표 1 제6호의 문화 및 청소년시설
라. 별표 1 제6호의 편의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미. 별표 1 제9호의 운수시설
비. 별표 1 제9호의 업무시설
사. 별표 1 제13호의 군수(당해 도로에 끌리는 바이번역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별표 1 제17호의 문화 및 청소년시설
자. 별표 1 제19호의 공용용수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 12)

보건조성의원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제1항제12호판란)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9호의 제1종 균형생활시설(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9호의 제2종 균형생활시설(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별표 1 제9호의 교육연구 및 청소년시설을 초동하고
비. 별표 1 제19호의 문화 및 청소년시설(국·주·수산법을 제외한다)
기. 별표 1 제9호의 풍물 및 청소년시설을 동호기획과 내지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
나. 별표 1 제7호의 터미널시설
다.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청소년시설을 동호기획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의 동호사업 내지 저작에 해당하는 것
라. 별표 1 제15호의 휴게시설 및 처리시설을 여객기증승선소 및 고粱기증승선·서장소
이. 별표 1 제17호의 문화 및 청소년시설
비. 별표 1 제20호의 표지판현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 13)

생산농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제1항제12호판란)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9호의 제2종 균형생활시설
다. 별표 1 제9호의 터미널시설
라. 별표 1 제9호의 교육연구 및 청소년시설을 동호기획의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의 동호사업 내지 저작에 해당하는 것
이.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비. 별표 1 제14호의 청소년시설
사. 별표 1 제15호의 휴게시설 및 처리시설을 여객기증승선소 및 고粱기증승선·서장소
아. 별표 1 제17호의 문화 및 청소년시설
자. 별표 1 제19호의 운동시설
2. 건축조리가 정하는 바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9호의 운동주택(여객터미널을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9호의 제2종 균형생활시설로서 면적제한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단위 주평면을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9호의 문화 및 청소년시설을 동호디자인 및 저작에 해당하는 것
라. 별표 1 제6호의 편의 및 영업시설(농·임·수·수산법을 관리시설에 한한다)

(제39회 - 산업건설 제2차 부록)

건축법 시행령	
<p>여.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동호기록의 학교(종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의 동호기록의 교육원(동·일·죽·수·수신원)과 건립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기록의 사업관련소</p> <p>마.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로철장, 석물공장, 제1차산업생산물의 가공공장과 용·연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산업공장에 한한다)</p> <p>사.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기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아.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간편시설을 동호기록 및 이목에 해당하는 것</p> <p>자.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자.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p>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률은 이를 건축할 수 있다.</p> <p>[별표 14]</p> <p><u>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규칙 및 계획</u> (제65조 제1항 제13호 관련)</p> <p>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p> <p>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p> <p>나. 별표 1 제1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에 한한다)</p> <p>다. 별표 1 제13호의 제1종 균진생활시설</p> <p>라. 별표 1 제14호의 제2종 균진생활시설</p> <p>마. 별표 1 제17호의 복지시설</p> <p>바. 별표 1 제1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p> <p>사. 별표 1 제19호의 운동시설</p> <p>이. 별표 1 제21호의 창고시설</p> <p>자. 별표 1 제17호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자.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카. 별표 1 제19호의 광물광산시설</p> <p>타.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p>파. 별표 1 제21호의 관계 등록시설</p> <p>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p> <p>가.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두시설</p> <p>나. 별표 1 제6호의 관계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기적인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장, 동반 제6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제작장(농어촌법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신설자원부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밀집형 및 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p> <p>다.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p> <p>라. 별표 1 제13호의 공장(어과도제공장, 도정공장, 석물공장과 용·연지역에 건축하는 제사업의 공장 및 철근산업공장에 한한다)</p> <p>마.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파.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률은 이를 건축할 수 있다</p>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188호('99. 8. 9) 게재
- 예고기간 : '99. 8. 9 ~ '99. 8. 28(20일간)
- 의견제출 : 1건

의견 제출자	영주시청 도시교통과
의견제출 내용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높이·면적·모양등의 건축기준을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토록 되어 있으므로, 순홍 소수서원, 금성단, 선비촌조성지구 주변을 전통한옥가구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영주시건축조례개정(안)중 미관지구내 건축제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조례등 검토
제안자 의견	규제개혁 차원에서 미관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규제할 수 있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영주시건축조례 종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현
------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79호
- 의 안 명 :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주택과

2. 개정이유

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규정을 폐지함(안 제3조)
- 나. 건축현장의 현장관리인 자격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3조의2)
- 다. 기준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함
(안 제4조 및 제4조의2)
- 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규정을 폐지함(안 제14조)
- 마.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15조)
- 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을 완화함(안 제16조 내지 제28조)
- 사. 풍치지구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완화·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폐지함(안 제29조, 제33조, 제34조)

- 아.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대지면적의 최소한도·대지안의 공지·건축물 높이·건축면적·건축물 모양 등 건축기준을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함(안 제35조 내지 제42조)
- 자. 학교시설 및 공용시설 보호구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규제를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함(안 제43조, 제44조)
- 차. 재해위험구역의 세분규정을 폐지함(안 제47조)
- 카.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변경함(안 제53조)
- 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규정을 폐지함(안 제54조, 제55조)
- 파.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절차 및 기준을 폐지함(안 제57조)
- 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시공기준 및 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61조)

4.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 목적은 건축관련 규제완화와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 조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증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 안 제3조,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규정을 폐지하고,
- 안 제3조의2, 건축현장의 현장관리인 자격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 안 제4조 및 제4조의2,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 안 제1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규정을 폐지하고,

- 안 제15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 안 제16조 내지 제28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 안 제29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풍치지구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완화·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폐지하고,
- 안 제35조 내지 제42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대지면적의 최소한도·대지안의 공지·건축물 높이·건축면적·건축물 모양 등 건축기준을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하고,
- 안 제43조 및 제44조, 학교시설 및 공용시설 보호구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규제를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하고,
- 안 제47조, 재해위험구역의 세분규정을 폐지하고
- 안 제53조,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변경하고,
- 안 제54조 및 제55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규정을 폐지하고,
- 안 제57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절차 및 기준을 폐지하고,
- 안 제61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시공기준 및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본 조례안을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 건축법(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의 개정 공포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 제3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5조제4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해진 조항의 개정이며,

- 제3조의2는 근거가 되는 법 제2조제1항제17호의 삭제에 따른 삭제이며,
- 제4조 및 제4조의2는 근거가 되는 영 제6조제1항의 신설에 따른 개정이며,
- 제14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28조의 개정으로 영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른 삭제이며,
- 제15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29조의 삭제에 따른 삭제이며,
- 제16조 내지 제28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65조제1항의 별표 2 내지 14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며,
- 제29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65조제1항의 별표 2 내지 14의 개정에 따른 조항의 개정이며, 제33조 및 제34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68조의 조례의 위임범위 개정에 따른 삭제이며,
- 제35조 내지 제42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69조 및 부칙(1999. 4. 30) 제1항에 의거한 삭제이나, 안 부칙 제1항에 의거 효력은 2000년 5월 8일까지 유효하며,
- 제43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70조 및 부칙(1999. 4. 30) 제1항에 의거한 삭제이나, 안 부칙 제1항에 의거 효력은 2000년 5월 8일까지 유효하며,
- 제44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71조 및 부칙(1999. 4. 30) 제1항에 의거한 삭제이나, 안 부칙 제1항에 의거 효력은 2000년 5월 8일까지 유효하며,
- 제47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86조의2에서 제해위험시설을 구체적으로 구분함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이며,
- 제53조는 근거가 되는 법 제49조 및 영 제80조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며,
- 제54조 및 제55조는 근거가 되는 법 제50조의 삭제에 따른 삭제이며,

- 제57조는 근거가 되는 법 제52조의 삭제에 따른 삭제이며,
 - 제61조는 근거가 되는 법 제56조의 삭제에 따른 삭제이며
 - 안부칙 제3항은 안 제53조제4호와 관련하여 조례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 제2조 개정으로,
 -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영주시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에서
- 순홍역사문화유적권개발사업 관련 전통한옥가구지구지정을 위한 미관지구내 건축제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조례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 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으로 필요시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수정과 대체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종합적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 조례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건축관련 규제개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 10.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현